

KCGS Report

제14권 3호 | 통권 제171호
2024.3.



한국ESG기준원

KCGS Report 제14권 3호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인: 심인숙

발행처: 한국ESG기준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TEL: 02-3775-3339 www.cgs.or.kr

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등록NO: 영등포, 라00532

※ 이 보고서의 견해 및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ESG기준원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상기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보고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표시 바랍니다.

KCGS Report

제14권 3호 | 2024. 3.

● ESG 동향

하도급법의 이해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방안	2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 동향	12
-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	28
- 코스닥150 기업을 중심으로 -	

● Global News

1. “그린워싱” 관련 ISSA 5000 초안 의견 제출 현황, 반응 및 시사점	41
2. 싱가포르, 기후 공시 의무화 계획 발표	44

하도급법의 이해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방안

정선아*

- ▶ 기업은 사업 활동 중 다양한 공정거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나, 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
- ▶ 본고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하도급법 등의 규제 동향 및 상장기업 ESG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ESG 관점의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각 기업이 인권, 환경과 더불어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상력 격차가 큰 자본재 업종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본고는 기업의 사전·사후심의제도 도입과 CP 운영 세부내용에 대한 공시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제시함

1. 검토배경

-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실사 규제화 기조에 발맞추어 각국의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리스크 식별,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CSDDD)은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 범위를 제시하여 기업의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특성상 하도급 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요국 대비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강도가 강한 편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인권, 환경과 더불어 공정거래 측면에서의 공급망 관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71%가 하도급 거래에 종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 거래 비중은 평균 83%에 달하므로, 공정거래 관련 이슈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¹⁾
 -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1,400건의 사건 중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는 842건으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²⁾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sac@cgs.or.kr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등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조 하에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갑을분야” 관련 제도적 보완과 감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는 등 하도급 관련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으며,³⁾
 - 24년 1월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함
- 본고는 관련 규제 및 국내·외 주요 ESG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리스크를 식별하고, 최근 3개년의 ESG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황을 점검함

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하도급법의 이해

-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는 아래의 주요 소관 법령을 포함한 14개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음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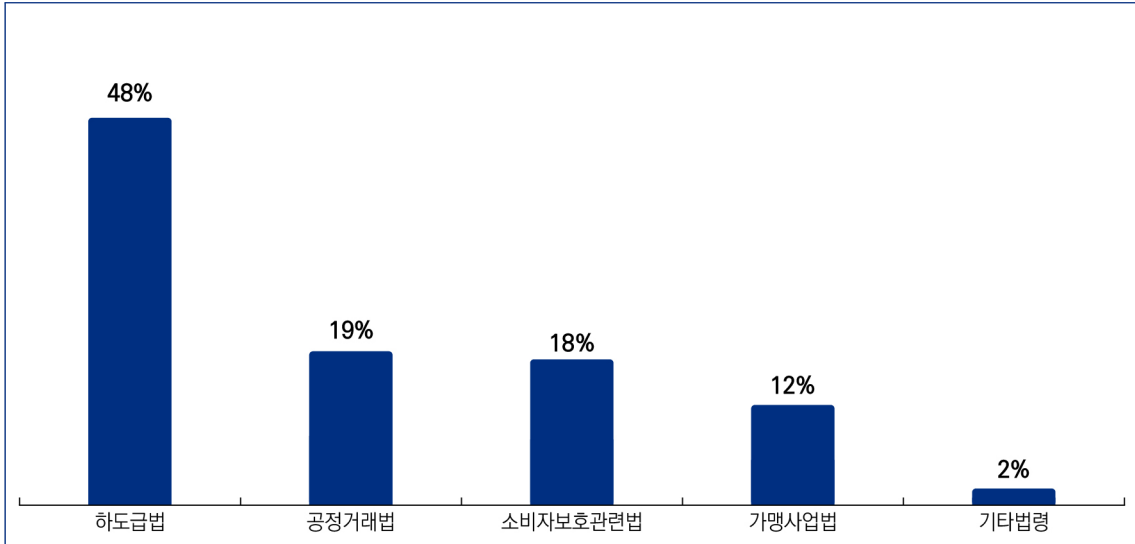
〈표 1〉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소관 법령

법령	주요 규제 유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 경제력 집중의 억제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 하도급 기술 유용행위 및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 부당 발주취소 • 부당 반품행위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규모유통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대리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 구입강제 행위의 감지 •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의 금지 등

-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사례가 전체 사건접수 건수의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공정거래위원회, 2024.01.07,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9, “2024년 공정위 신년사”
 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03.18, “소관부처별 현행법령”

〈그림 1〉 최근 5년간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누적현황



출처 : 2022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 「하도급법」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임⁵⁾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피규제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에는 대기업,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모두 포함됨
 - 2023년 10월 5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어 하도급법 준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⁶⁾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 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앞의 논문

6) 공정거래위원회, 2023.09.27,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10월 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내용 포함해야”

〈표 2〉 하도급법 주요 쟁점

분류	주요 내용
대상	원사업자:최초 도급계약의 수급자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 수급사업자: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자 →원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하도급법상 의무 및 규제사항	하도급 기술 유용행위 및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 소송 보장
최근 주요 쟁점	하도급 연동제 시행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게 되면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이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

3. ESG 가이드라인 내 하도급 관리의 중요성

□ ESG 모범기준 내 불공정거래 리스크 지표

3.2 기업은 공정한 거래와 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기업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거래저해성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시장 경쟁의 정도나 경쟁사업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되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지양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 및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가격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ESG 모범기준은 기업이 1) 정당한 가격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2)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여 공정한 거래행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금을 설정하여 감액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함
-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예방을 위해 ESG 모범기준은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자율적인 도입 및 운영을 권고하고 있음

□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 중
공정거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세부 내용

Disclosure Requirement G1-6-Payment practices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금 지급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적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관행에 대한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본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은 계약상의 지불 조건과 평균 실제 지불 조건에 대해, 그리고 연체금과 같은 불리한 지불 조건이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임
 - ① 계약 또는 법정 지불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송장을 지불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일 수)
 - ② 공급업체의 주요 범주별 일 단위로 표준 지불 조건과 이 표준 조건에 일치하는 지불 비율에 대한 설명
 - ③ 연체 신고 기간 동안의 법적 소송 건수(현재 미결)
 - ④ 충분한 맥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보완 정보.

- ESRS 공시안 중 G1 Business Conduct는 거래대금 지급 관행 리스크에 관한 항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함⁷⁾
 - 특히, 하도급 대금 유동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도급의 대금 지급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관련 지표를 공시할 것을 권고함
- 국내·외 주요 ESG 가이드라인은 공통적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리스크에 대한 공시를 제안하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폭넓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 ESG 평가 내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현황

- 국내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 현황 분석
 - (분석 목적) 국내 상장기업의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도급거래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확인함
 - (분석 대상 및 방법) 본 원에서 시행되는 사회평가의 '등급조정'결과와 '심화평가'결과를 활용함
 - 2021년~2023년 시행된 전체 등급조정 안건 중 사회평가 이슈로 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정사유와 분포를 확인
 - 2021년~2023년 시행된 사회평가 심화평가를 대상으로 '공정운영관행' 관련 문항으로 감점된 기업의 비중과 내용을 확인
- (등급조정 결과 활용) 본 원에서는 매년 1회 ESG평가를 실시하여 영역별 등급 및 통합 등급을 발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기업의 중대이슈와 ESG리스크 수준을 점검한 결과를 전년도

7) EFRAG, 2022, "Draft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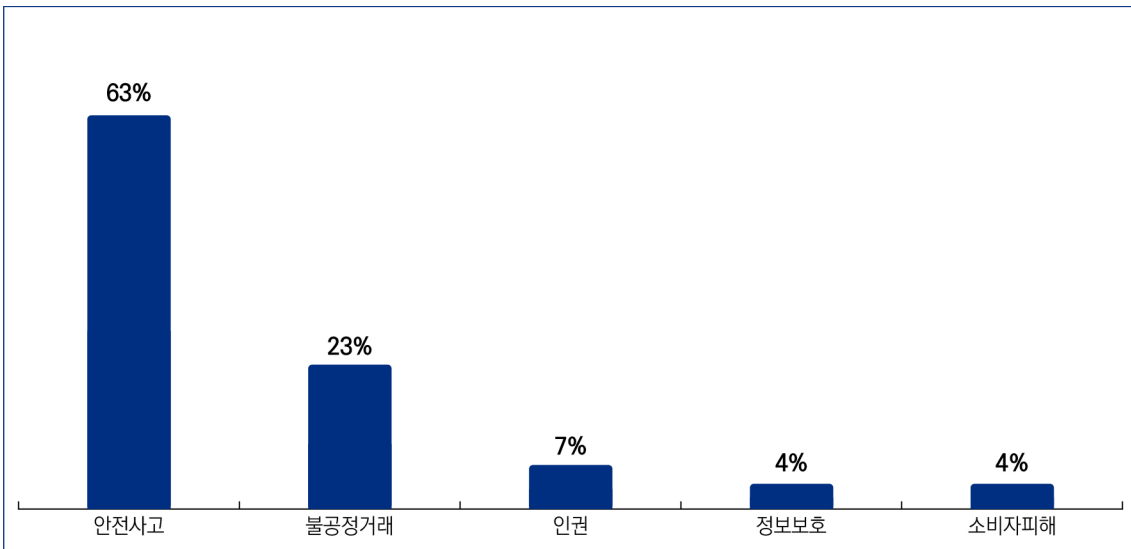
정기평가등급에 반영한 ‘등급조정’을 발표하여 분기별 기업의 ESG리스크 수준을 등급에 반영하여 전달하고 있음

- 등급조정 안건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건의 분포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

□ **분석결과 ① : 최근 3개년 사회평가 등급조정 안건 현황**

- 2021년도~2023년도의 사회평가 등급조정 안건현황 확인 결과, ‘공정운영관행’ 관련 안건은 총 23%를 차지함
- ‘공정운영관행’ 관련 등급조정 안건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안들이며, 구체적인 사유로는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 보호 관련 법 위반 등이 있음

〈그림 2〉 2021년~2023년 사회평가 등급조정 안건 사유 분포



□ **(심화평가 결과 활용)** 최근 3개년의 심화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감점 현황과 하도급법 제재 관련 리스크 비중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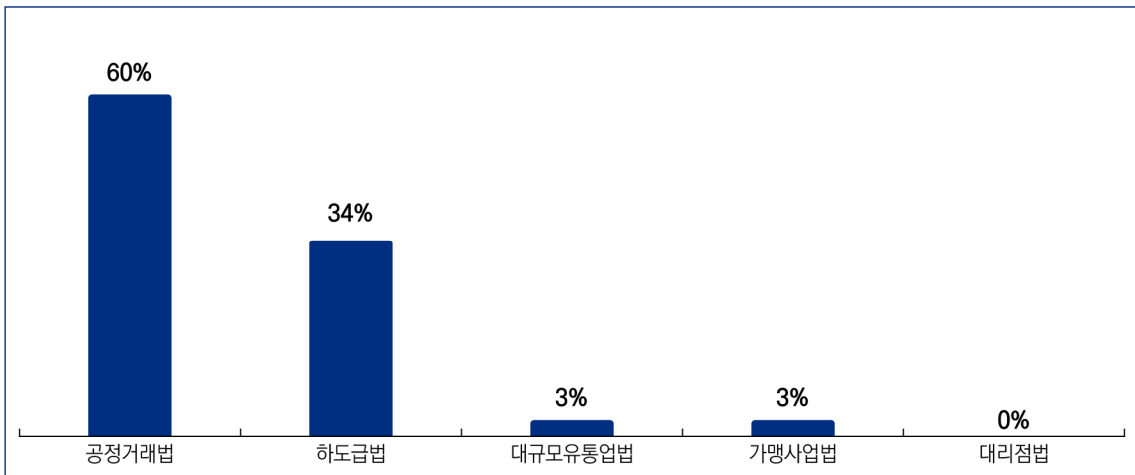
- 본 원의 심화평가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법적/행정적 제재 및 조치, ESG리스크를 수반하는 부정적 사고/사건과 같이 평가대상 기간 중 발생한 기업의 부정적인 중대이슈(Controversy Issue)에 대하여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됨⁸⁾

8)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방법론”

□ 분석결과 ②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감점현황

- 최근 3년간 심화평가 ‘공정운영관행’ 관련 문항에서 감점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소관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이 중 22년 하도급법 위반 관련 감점 비중은 34%로, 공정거래법 위반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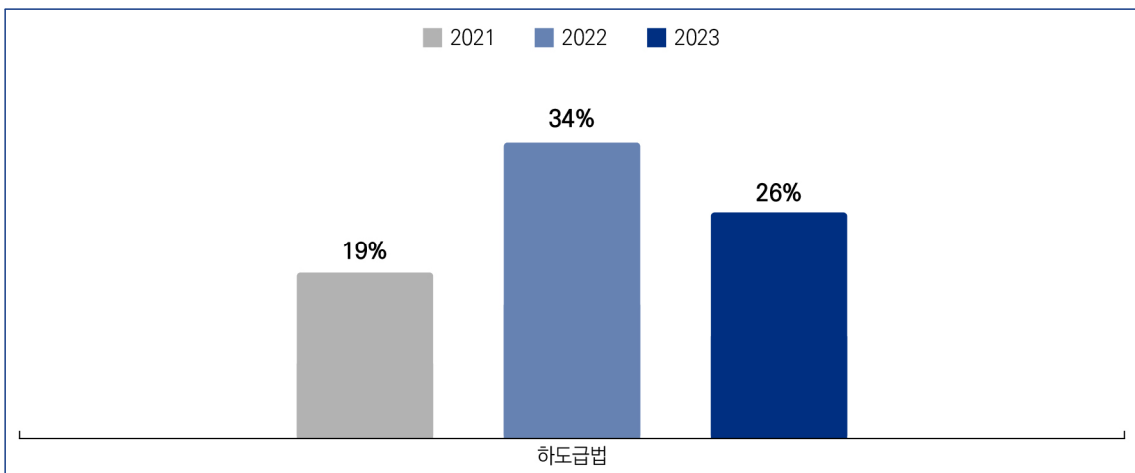
〈그림 3〉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감점 현황



□ 분석결과 ③ : 최근 3개년 하도급법 위반 비중 추이

- 하도급법 위반 비중은 23년 공정운영관행 관련 감점 비중 중 26%로 2년 연속 25% 수준을 상회함
- 하도급법 위반이 공정운영관행 이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제 강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리스크가 잔재하고 있음을 확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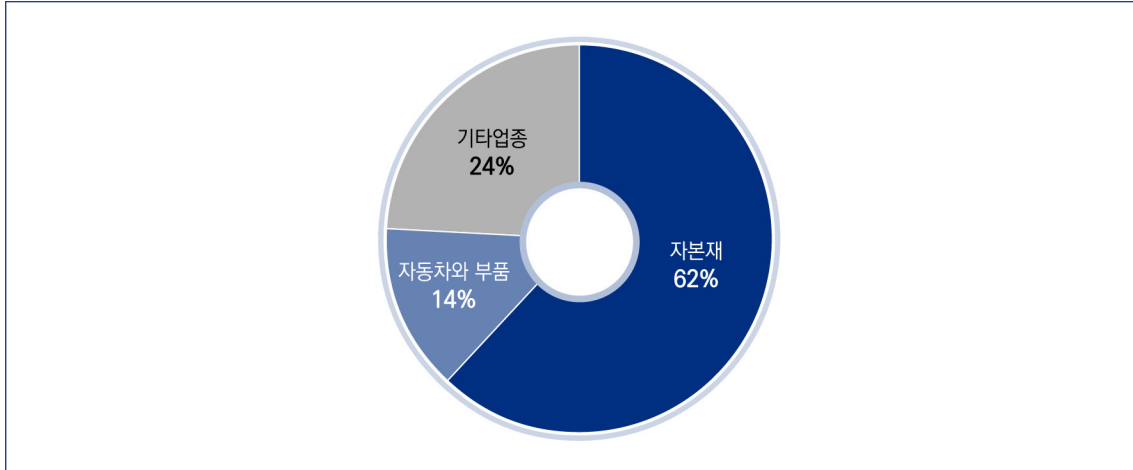
〈그림 4〉 2021년~2023년 하도급법 위반 비중 추이



□ 분석결과 ④ : 하도급법 위반 주요 업종 비중

- 업종별 하도급법 위반 분석 결과, 자본재⁹⁾ 업종이 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따라서 자본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하도급 관련 리스크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하도급법 위반 주요 업종 비중



5.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방안 제안

- 기업의 불공정거래 리스크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함

1. 자율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사후 심의제도 도입¹⁰⁾

- 효성첨단소재는 협력사와 거래 시 위법사항과 불공정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위해 2022년부터 ‘사전·사후 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전·사후 심의제도’는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선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해당 제도를 통해 거래 전 서면 계약서 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강제·경제적 이익 부담 요구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완료 이후에는 대금 감액 여부 등을 확인함

9) FnGuide의 WICS(Wise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Sector 중분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본재 업종은 설비, 부품, 원자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건설, 조선 업종 등이 해당됨

10) 효성첨단소재, 2022, “2022 효성첨단소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sustainability.hyosungadvancedmaterials.com/kr/report/sustainability>

2. CP 운영 결과 공시

-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시스템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부터 원칙적으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CP등급평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10년부터 등급 평가 업무를 한국거래조정원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24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CP등급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CP를 도입, 운영할 경우 제재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¹¹⁾
 - CP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제공
 - AA등급 이상을 취득한 기업은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15%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으며, CP 운영을 통해 법규 위반을 자발적으로 탐지, 통제했음을 입증할 경우 추가 5% 감경 혜택이 부여됨
- CP는 기업의 전사적인 불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은 CP 도입 및 운영을 통해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법적 요구사항이 많은 하도급법 관련 준법 리스크 예방¹²⁾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¹³⁾
- 그러나 CP를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교육 현황, 연간 일정 등을 간략히 기술하는 정도에 그치며, 이에 대한 세부 활동 및 실적 등의 공개는 미흡한 수준임
- CP 도입 및 운영을 통해 기업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예방 활동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
- SK이노베이션의 경우, CP 운영의 일환으로 불공정거래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음¹⁴⁾
 - 위반사례, 분쟁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공시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11) 공정거래위원회, 2023, “CP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2) 2022년 공정거래조정원 보고서 설문 중 “CP 도입·운영 업체 중 어떤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CP를 도입하였는가” 항목에 대한 311개 답변 사례(복수 응답 가능) 중 81%가 하도급법 준수를 목적으로 CP를 도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정거래법(74.9%), 대규모유통업법(27.7%)이 각 2, 3위를 차지

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 “ESG평가에서 공정거래 지표 분석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의 역할 증진 방안 검토”

14) SK이노베이션, 2022, “2022 SK이노베이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www.skinnovation.com/esg/sr_01

마치며

-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는 준법(컴플라이언스) 및 ESG 측면에서 모두 중요함
- 본 원의 '21~'23 사회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 현황 분석 결과, 공정운영관행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함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감점현황에 따르면, 공정운영관행 이슈 중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리스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따라서, 기업의 공정운영관행은 인권, 환경영향과 더불어 중대한 ESG리스크로 관리되어야 하며,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자본재 및 일부 제조업종은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에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고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리스크 저감을 위하여 1) 사전·사후심의제도 도입과 2) 자율적인 CP 도입, 운영을 제안하며, 기업이 CP 등의 제도/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도 형식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세부 활동 및 실적을 정기 공시하는 등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제안함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 동향

-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최두진*

- ▶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은 비계량적인 ESG 성과를 측정해 ESG 활동 수준에 대한 진단과 효율성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 ▶ 다만, 기업 간 상이한 측정 방법론 적용 시 산출되는 결과의 편차가 심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함
- ▶ 또한 측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산식 및 수치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검증 가능성'악화로 인한 워싱(washing)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그럼에도 그룹사별 선도기업 중심으로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추후, 깊이와 범위 고도화를 통한 유용성 확보를 기대함

서론 - 연구 목적 및 배경

- 경영 활동이 사회 다방면에 긍정, 부정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추구와 더불어 인권,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¹⁾이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Bowen의 정의 이후, ESG / CSR 활동은 재무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비용으로 인식됨. ESG 수준과 기업 가치 간 정(+)의 상관관계를 주장하는 최근 연구 역시 ESG / CSR 활동이 직접 재무성과를 창출하기보다 '비계량적' 긍정 효과(마케팅 효과, 기업 내부 현금흐름 증가에 대한 신호 효과 등)를 유발함에 따라 기업 가치(추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주를 이룸²⁾.
-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경기침체에 ESG 활동이 위축³⁾되는 현상은, 집계 가능한 지출 비용 대비 비계량적인 ESG 성과에 기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연구원, doojin.choi@cg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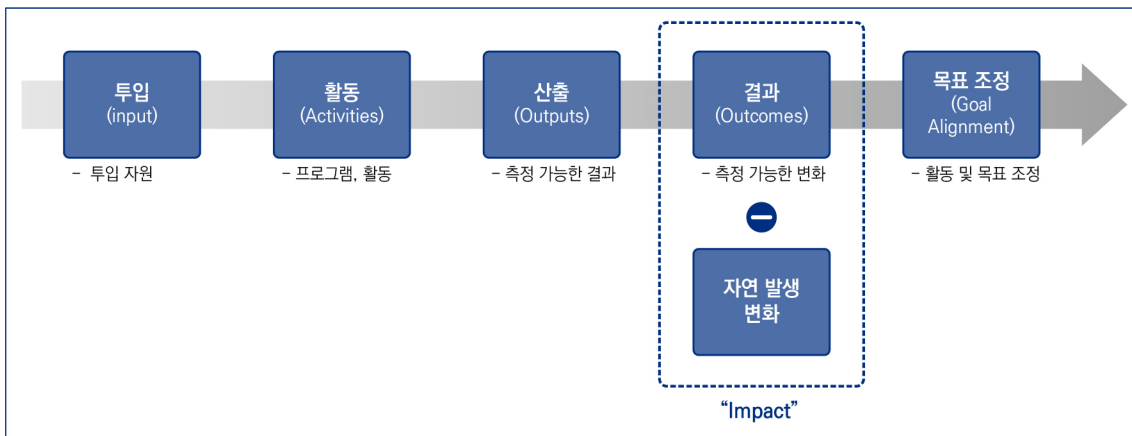
1) Bowen (1953),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Businessman, p.8.

2) 김양민, 박지현 (2021), ESG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재무성과: 실증연구 고찰과 향후 발전 방향, p. 5.

3) 이창섭, 전아름, 전홍민 (2021), 경제정책불확실성과 기업의 ESG활동, p.2.

- 이러한 ESG 활동의 재무성과에 대한 회의론과 활동 성과의 비가시성을 고려할 때, 사회 성과에 대한 화폐가치 측정은 ESG 활동 비용에 대응되는 성과를 계량해, 기업의 ESG 활동 수준 진단과 효율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화폐가치 측정 방법론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방법 소개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고도화된 측정 방법론을 개발 중임
 - 사회 성과에 대한 정의는 화폐가치 측정 방법론마다 상이하며 대개 단순 투입 지표가 아닌, 자원 투입에 따른 대상의 변화량(outcome 혹은 impact)을 성과로 정의함⁴⁾⁵⁾

〈그림 1〉 임팩트 밸류 체인⁶⁾



- 충실하게 표현된(표현 충실성)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특히 기업 전사적으로 창출된 경제, 사회, 환경 측면 성과의 합은 기업 비재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시에(확인 가치) 이해관계자들의 비재무 리스크 파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에서(중요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적합한 정보(목적 적합성)로 간주할 수 있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이는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이하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게 됨⁷⁾
- 다만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하기 위해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등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하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만족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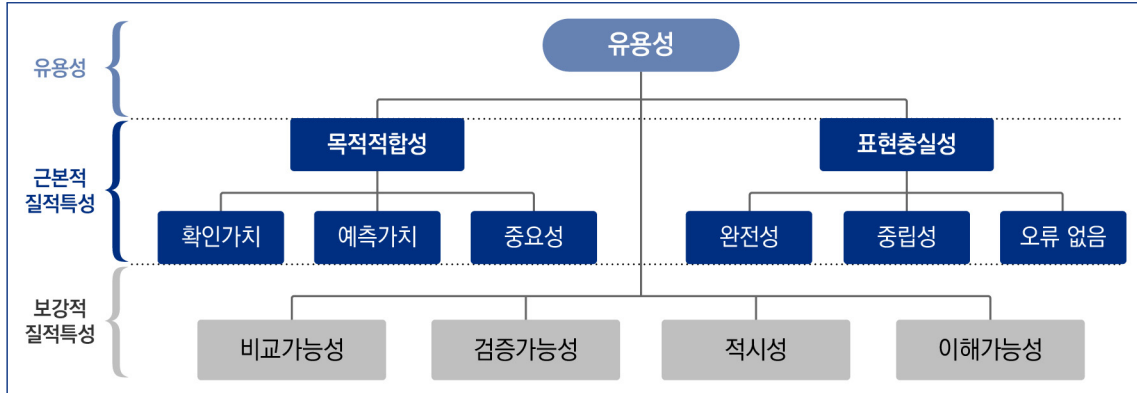
4) SK 주식회사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28.

5) KPMG (2019), Valuing your impacts on society, p.2-6.

6) Rosenzweig, William (2004), Double Bottom Line Project Report: Assessing Social Impact In Double Bottom Line Ventures, p. 7. 재가공

7) ISSB,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 38.

〈그림 2〉 재무보고 개념체계의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⁸⁾



○ 본 보고서는 여러 사회 성과 화폐가치 측정론 중 ①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치 측정 방법론들을 간략히 비교, 분석한 후, ② 국내 주요 기업들의 사회 성과 측정 여부 및 사용 모델, 측정 단위, 공개 수준, 그룹사별 측정 동향을 파악함. 또한,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의 확인 가치,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충족 여부를 확인함. 사회 성과 화폐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접근이 제한돼 ‘목적 적합성’의 중요성 및 ‘표현 충실성’ 검증에 한계가 있어 전술한 세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본론 I - 사회 성과 측정 방법론의 종류

□ 비재무 성과인 사회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화폐가치 방식과 비화폐가치 방식이 있음

〈표 1〉 사회 성과 측정 방법론의 종류⁹⁾¹⁰⁾

구분	분류	설명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화폐가치 방식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성과를 가장 보편적인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측정함
True Value		경제, 사회, 환경 영역에서 긍정, 부정 측면을 분류해 임팩트를 측정함
TIMM (Total Impact Measurement Management)		조직,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가 사회, 환경, 조세, 경제 영역에서 발생하는 임팩트를 화폐가치로 도식하여 측정
DBL (Double Bottom Line)		경영활동의 실제적 결과(Outcome)를 경제간접적여성과, 비즈니스 사회성과, 사회공헌 사회성과로 구분하여 객관적 준거 가격(Proxy)을 적용해 화폐가치로 측정함
ESG평가 (한국ESG기준원)	비화폐가치 방식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수준을 측정하여 등급으로 평가함
BSC (Balanced Score Card)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성과측정기록표로써 4가지 관점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8) ISSB,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p. 38-43. 재가공
 9) 조영복, 신경철 (2013), 사회적 가치측정 주요 평가 체계, p.8. 재가공
 10) 정아름, 허승준, 송기광, 김보영 (2020), 사회적 가치 측정방법의 특징 분석 및 최신 동향, p.11-13. 재가공

□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 미국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에 의해 처음 제안된 SROI는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사회 성과(비용 절감 및 창출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를 투입 비용의 현재가로 나누어 계산하며, 값이 1 이상일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함¹¹⁾

〈그림 3〉 SROI 측정 예시¹²⁾¹³⁾

□ 시점 별 현금흐름 예시						
시점(t)	0	1	2	3	4	5
창출된 경제적 편익			EV_2	EV_2	EV_2	EV_2
창출된 사회적 편익			EV_2	EV_2	EV_2	EV_2
투입물		I_1		I_3		I_5

□ SROI 산출예시	
$SROI = \frac{\sum_{t=1}^5 \frac{(EV_t + SV_t)}{(1+r)^t}}{\sum_{t=1}^5 \frac{I_t}{(1+r)^t}} = \frac{PV(EV_t + SV_t)}{PV(I_t)}$	* 경제적 편익 : EV_t 사회적 편익 : SV_t 투입물 : I_t 할인율 : r

〈표 2〉 SROI 측정 절차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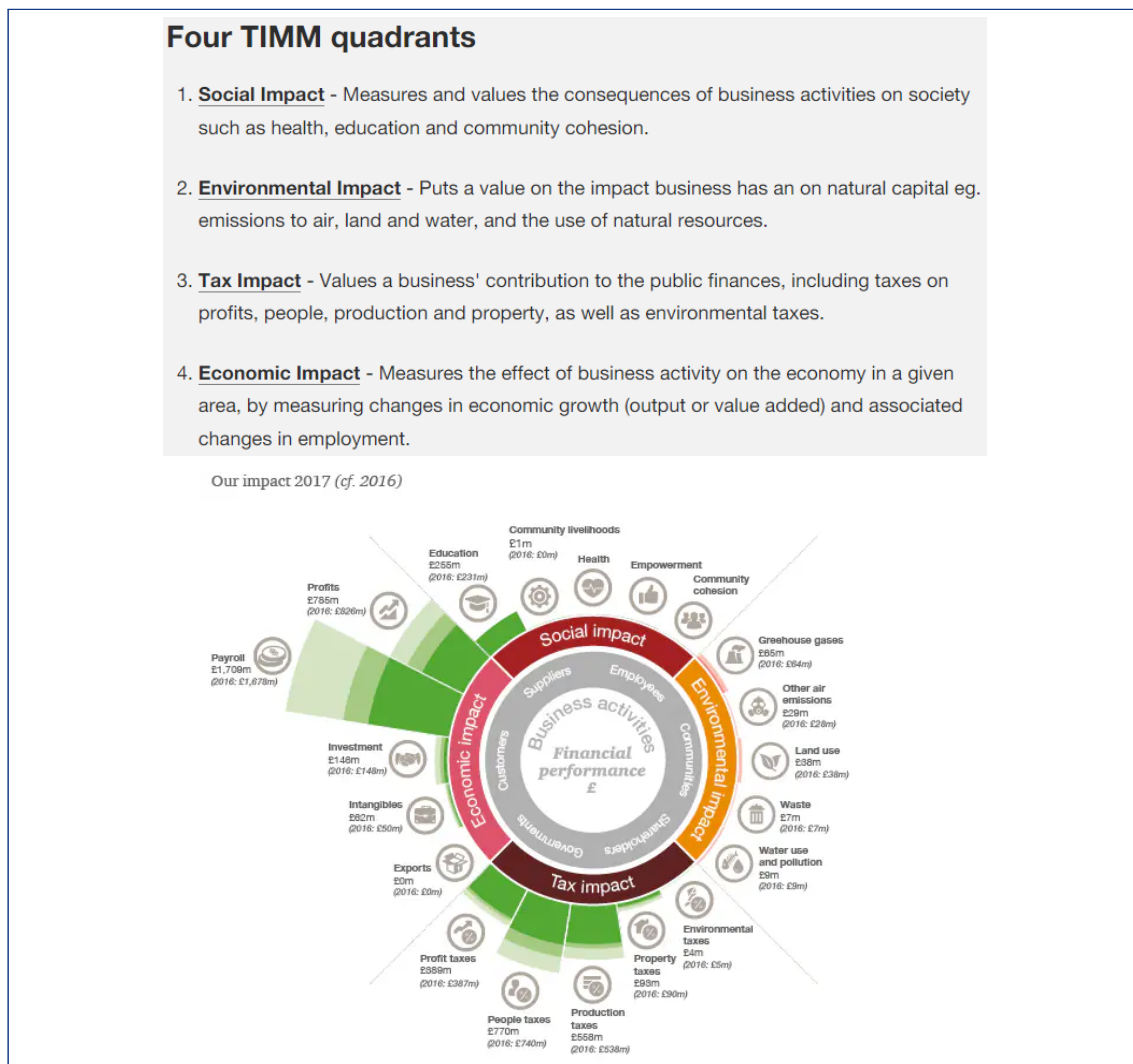
구분	단계명	설명
①	범위 설정과 이해관계자 확인	목적과 배경 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설정
②	결과물 정의 및 매핑	사용된 자원, 산출물, 결과물 기술
③	결과물 증명과 가치 부여	결과물에 측정 가능한 합리적 지표를 설정하고 재무적 대응치(financial proxies) 를 이용해 화폐가치로 측정(monetisation)
④	영향력 산정	자연 발생 변화(deadweight)와 다른 원인으로 인한 변화(attribution)을 제거해 impact 산출
⑤	SROI 산출	적정 할인율을 활용해 SROI 계산
⑥	보고, 활용 및 내재화	이해관계자에 보고 및 활용

- 이 방법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되는 결과를 측정할 수 있으나 기댓값이 할인율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결과물, 범위, 지표 등이 측정 입력의 주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절대적 산출치에 대한 해석 혹은 기업 간 비교보다 단일 기업에 대한 종단적 분석에 유용함¹⁵⁾

11) Emerson, Wachowicz, Chun (2000),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p. 9.
 12) Emerson, Wachowicz, Chun (2000), Social Return on Investment: Exploring Aspects of Value Cre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p. 10. 재가공
 13) 유명상, 원용숙 (2017), [insight report]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론, p. 17-18. 재가공
 14) 조영복, 류정란 (2010), 사회적 투자수익률 측정 가이드, p.37-134.재가공

- 컨설팅사 측정 모델 - TIMM(Total Impact Measurement Management), True Value
- (TIMM) 2013년, PwC 컨설팅에서 개발한 임팩트 측정 방법으로 사회, 환경, 조세,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긍정, 부정 임팩트를 합산하는 방법임¹⁶⁾
 - 다만 기업의 실제 활용 시, 조세 측면은 경제 측면에 귀속되어 보고되는 경우가 많음
 - 이 방법은 의사결정자들이 측정 대상의 통합 임팩트를 평가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 투자 및 영업활동 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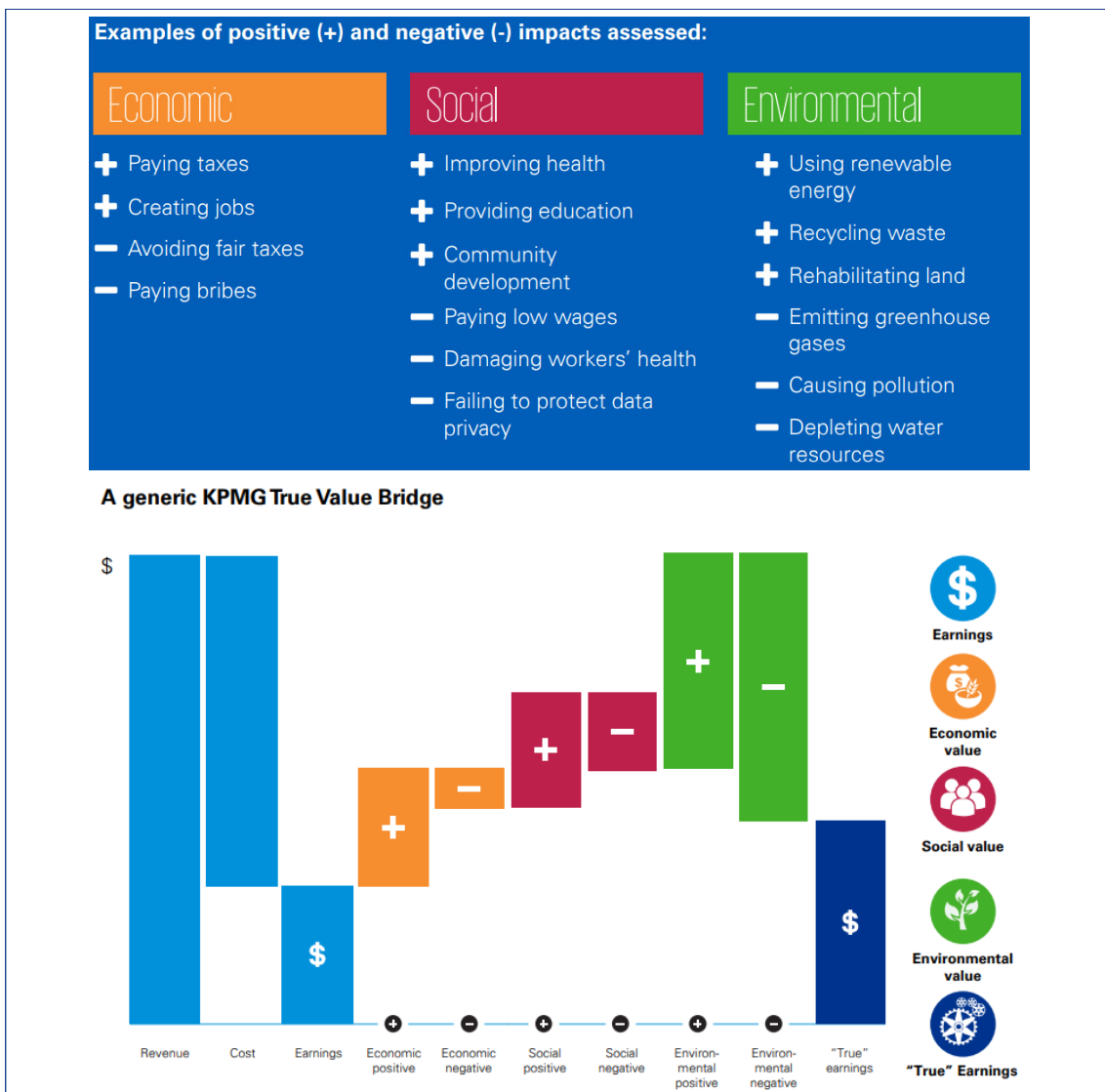
〈그림 4〉 TIMM의 4대 구성요소 및 측정 도식¹⁷⁾¹⁸⁾



15) 이승규, 라준영 (2010), 사회적 기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 : 사회투자수익률(SROI), p.15.
 16) PwC, <https://www.pwc.com/gx/en/services/sustainability/total-impact-measurement-management.html>
 17) PwC, <https://www.pwc.co.uk/services/sustainability-climate-change/total-impact/social-capital-valuing-the-impact-business-has-on-society.html>
 18) PwC, <https://www.pwc.co.uk/who-we-are/our-purpose/performance/valuing-our-total-impact.html>

- (True Value) 2014년, KPMG 컨설팅에서 개발한 임팩트 측정 방법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기업의 긍정, 부정 임팩트를 합산하는 방법임¹⁹⁾
 - 글로벌 기업의 오퍼레이션부터 단일 제품, 서비스까지 모두 적용 가능하며 KPMG 연구원들이 중대성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재무적 가치로 환산해 구함
 - 이 방법은 경영자들이 재무적 지표 (financial metric)를 사용해 회사의 다양성 영향을 비교, 대조하도록 유도함

〈그림 5〉 True Value의 3대 구성요소 및 측정 도식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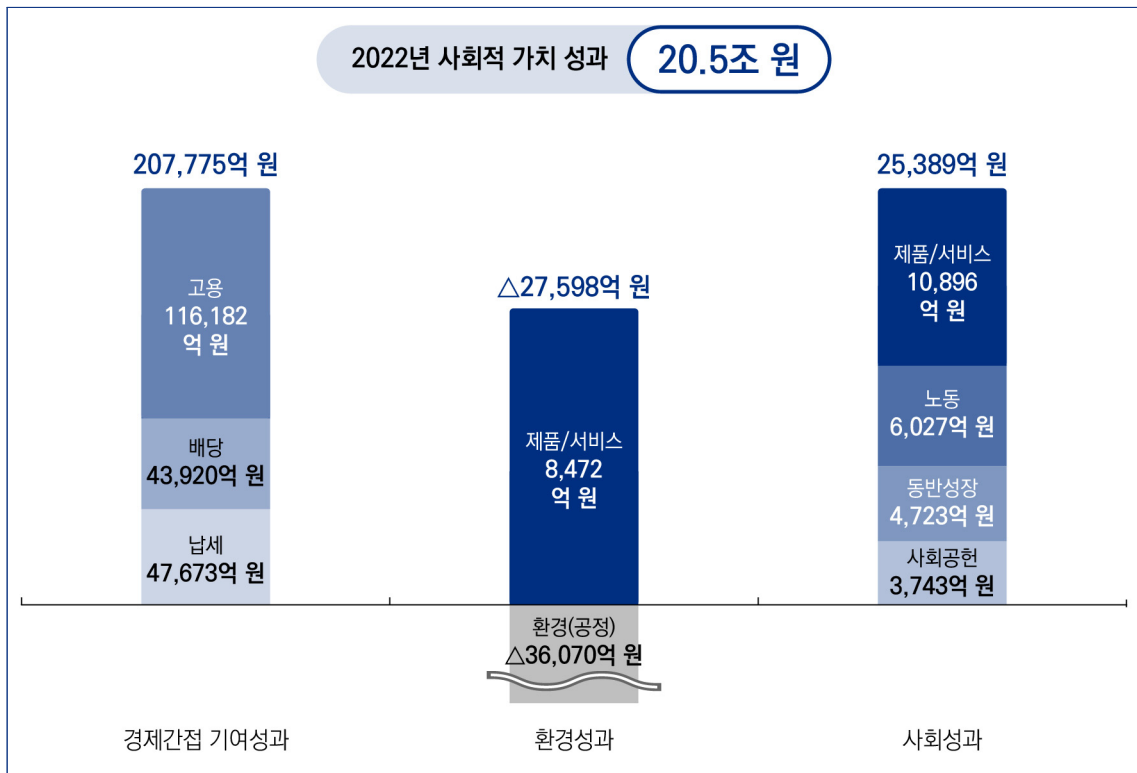


19) KPMG (2019), Valuing your impacts on society, p.3.
 20) KPMG (2019), Valuing your impacts on society, p.3-4.

□ DBL(Double Bottom Line)

- 2017년, SK그룹은 당기순이익 등 전통적 재무성과인 경제적 가치와 사회 문제 해결 성과의 합을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로 정의함²¹⁾
 - 사회 성과는 각각 경제, 사회, 환경 성과로 구성되어있으며, 비교 기준인 시장 가격(baseline), 재무적 대용치(financial proxies) 및 측정 산식을 공개하고 있음
 - 창출한 가치와 더불어 측정 산식의 투입변수를 공개한 점은 주목할 만함. 산식과 시장 가격, 대용치 공개 시, '검증 가능성'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임²²⁾

〈그림 6〉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산출²³⁾



- 한편, 경제, 사회, 환경 세 축을 통해 사회 성과를 측정한 점에서 컨설팅사 모델과 유사함
- 다만,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 구성요소 중 납세액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를 사회 성과에 포함하지 않음. 이는 컨설팅사 모델보다 '직접 창출된 사회 성과'를 분류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매년 대규모 CAPEX 지출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을 주로

21) SK주식회사, <https://www.sk.co.kr/ko/esg/socialvalue.jsp>

22) 값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투입변수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은 검증 가능성을 높임

23) SK주식회사, <https://www.sk.co.kr/ko/esg/socialvalue.jsp>

- 영위하는 한국 우량기업 특성상, EBITDA를 모두 사회 성과에 포함할 경우, 연간 창출되는 사회 성과는 ESG 활동보다 기업 영업활동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예컨대, '23년 A사가 PwC의 TIMM 모델을 사용해 공개한 '22년 사회적 가치 창출액은 2조 9,877억원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와 이익의 합은 1조 5,515억원으로 51.9%에 해당함²⁴⁾.
 -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 직접 수혜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이익과 감가상각비 등은 경제적 가치로 별도 집계하는 DBL모델이 컨설팅사 모델 대비 직접 창출 성과에 대한 '확인 가치'가 높으며, 따라서 TIMM보다 목적 적합하다고 판단됨²⁵⁾

본론 II -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의 사회 성과 측정 동향

- 분석 대상 1 :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
 - 사회 성과 측정은 ESG 활동의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중 후반부인 Check 단계에 해당하기에 측정 활동에 수반되는 노력 대비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미미함
 - 따라서 인력 및 비용 투입 부담이 덜한 우량기업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의 2개년 공개 동향을 조사함
 - '22, '23년 연초 기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조회한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우선주 제외)의 공개 출처(홈페이지, 지속가능보고서, CSR 보고서, 임팩트 보고서 등)를 조사함
- 분석 대상 2: 측정 방법, 측정 단위, 공개 수준
 - 측정 방법
 - 분석 이유 : 그룹사별 측정 방법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창출된 정보의 '비교 가능성' 충족 여부를 조사함
 - ▲ SROI, ▲ 컨설팅(TIMM, True Value 등) ▲ DBL, ▲ 자체 측정으로 분류함
 - 방법론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엔 자체 측정으로 분류했으며 DBL의 경우, SK그룹의 자체 개발 모델임에도 그룹사 내 범용성을 고려해 별도 분류함
 - 측정 단위
 - 분석 이유 : 성과에 대한 피드백 범위의 포괄성 기반 '확인 가치' 충족 여부를 조사함
 - ▲ 프로젝트, ▲ 제품/서비스, ▲ 기업으로 분류함
 - 공개 수준
 - 분석 이유 : 측정 방법의 '검증 가능성' 확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함

24) A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한 이익과 감가상각비는 DART에 공개한 연결, 별도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감가상각비와 차이가 있음. 다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구체적 수치 산출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차이 원인을 밝힐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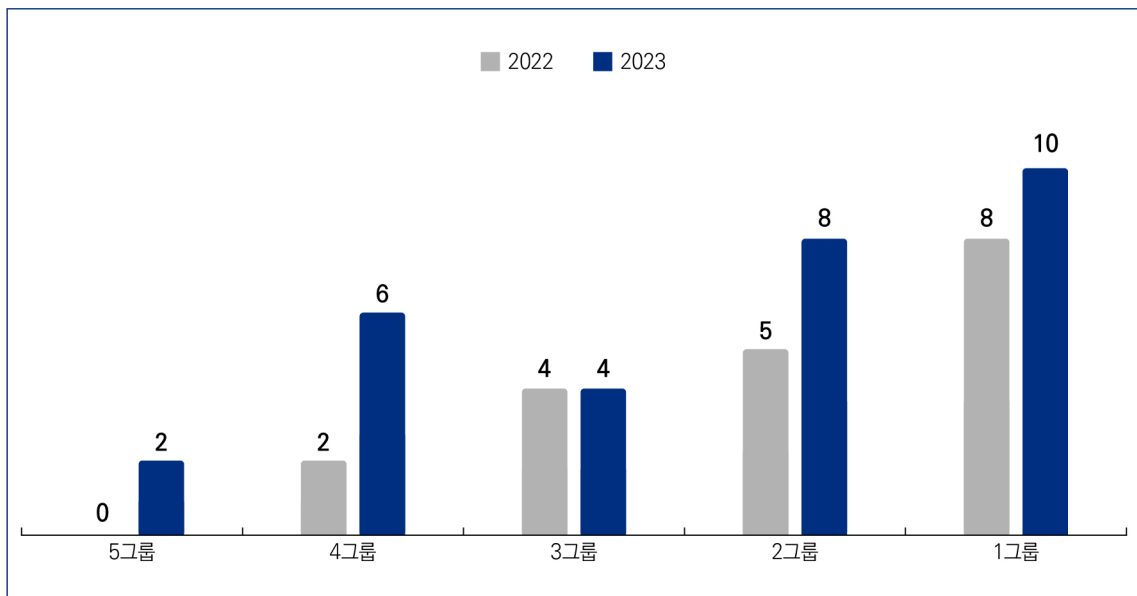
25)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에 대한 피드백인 '확인 가치'를 충족할 경우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을 만족함

- ▲ 미공개, ▲ 방법 공개, ▲ 산식 공개, ▲ 준거 가격 및 대응치 공개로 분류함
- 기타 가정 및 분류 기준
 - 전사 단위 측정치 파악을 위해선 제품, 서비스 및 기업이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가장 광범위한 측정 단위로 가정함
 - 사회 성과를 공개했다라도, input 지표만을 공개한 경우(ex. 사회공헌 기부금, 봉사활동 시간 × 시간당 임금, 상생협력 펀드 조성액, ESG 채권 발행액 등) 및 측정이 아닌 계정 재분류('사회 성과 = 매출액 + 급여 + 사회공헌금액 + 연구개발비' 와 같은 계정의 단순 합산)는 미공개로 간주함
 - 또한 시가총액 규모별 공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총 100개사를 20개사 단위로 5그룹화함
 - 1그룹 : 1~20위, 2그룹 : 21~40위, 3그룹 : 41~60위, 4그룹 : 61~80위, 5그룹 : 81~10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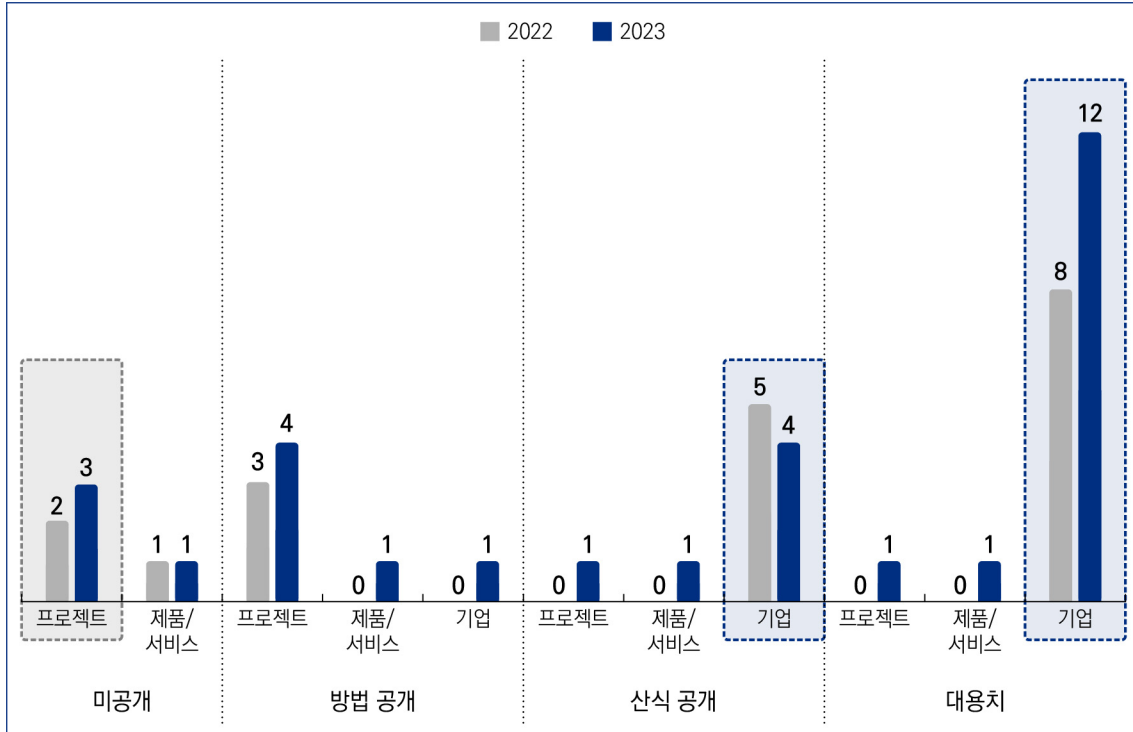
□ 사회 성과 측정 동향 개괄

-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사회 성과 화폐가치 측정 기업은 '22년 19개사에서 '23년 30개사로 11개사가 증가함.
- 시가총액 그룹별 측정 기업 수는 규모에 관계 없이 고르게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5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긍정적인 점. 다만 '23년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만이 사회 성과를 측정해 절대적인 도입 수준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22년 대비 '23년 시가총액 그룹별 사회 성과 측정 추이



〈그림 8〉 '22년 대비 '23년 사회 성과 측정 산식 공개 수준별 측정 단위



- 공개 수준별 측정 단위는 공개 수준이 높을수록 측정 단위의 포괄성이 높은 양상을 보임
 - 측정 단위 '프로젝트'는 단발성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의미함
 - 측정 단위 '제품 및 서비스'는 기업 영업 활동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함. 예컨대, 협력회사 향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은 '제품 및 서비스'로 분류함
 - 측정 단위 '기업'은 전사 단위 포괄적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년과 '23년, 측정 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기업은 각 3사와 4사로, 이 중 과반인 각 2사와 3사가 단일 프로젝트 단위만을 측정했음
- 반면 대응치를 공개한 기업은 '22년과 '23년, 각 8사와 14사로, 이 중 대부분인 각 8사와 12사가 기업 전사 단위까지 측정했음
- 즉, 사회 성과 측정 산식의 공개 수준이 높아질수록(보강적 질적 특성 중 검증 가능성) 단일 프로젝트 혹은 제품보다 기업 전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측정(근본적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의 확인 가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측정 산식 공개 수준이 높을수록 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부 차원의 엄정한 검증을 거쳤을 것이며, 이에 발맞춰 측정 역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추측함

□ 측정 방법별 공개 수준

〈표 3〉 '22년 대비 '23년 사회 성과 측정 기업 수 변화

구분	공개 수준	2022	2023
자체		8	15
	대용치	1	5
	산식 공개	3	4
	방법 공개	2	3
	미공개	2	3
DBL		7	9
	대용치	7	9
컨설팅		3	4
	산식 공개	2	2
	방법 공개		1
	미공개	1	1
SROI		1	2
	방법 공개	1	2
총계		19	30

- 측정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 측정 방법론을 도입한 기업이 총 7사 증가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 공개 수준 '미공개'는 측정 방법과 산식, 대용치 등을 공개하지 않은 가장 낮은 공개 수준을 의미함
 - 공개 수준 '방법 공개'는 측정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개념적 설명을 공개했음을 의미함. 예컨대 '당사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 성과, 환경 성과, 사회 성과에서 창출된 긍정, 부정 임팩트를 가감함'과 같은 개괄적 방법론만을 공개하고 '경제, 환경, 사회 성과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및 산식'은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공개 수준 '산식 공개'는 측정 방법론의 산출 방식 공개를 의미함. 예컨대 '사회 성과 중 금융 지원으로 인한 상생협력 임팩트는 대여 금액 × (시중은행 평균 여신 금리 - 당사 대여 금리)를 일할 가중평균해 측정함'과 같이 방법론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한 경우를 의미함
 - 공개 수준 '대용치 공개'는 산식에 사용된 준거 가격과 대용치까지 공개했음을 의미함. 위의 예시에서 '시중은행 평균 여신 금리 : 3.5%, 당사 대여 금리 : 1.5%'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가장 높은 공개 수준임
- DBL의 경우, 특성상 SK그룹 소속 회사의 시가총액 100위 포함 여부가 증감을 좌우하기에 모델 확대 도입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컨설팅사 측정 모델과 SROI를 도입한 회사는 각 1사씩 증가하는데 그쳐, 외부 측정 툴 활용보다 기업별 주체적인 측정 방법론 개발이 트렌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자체 측정 기업의 공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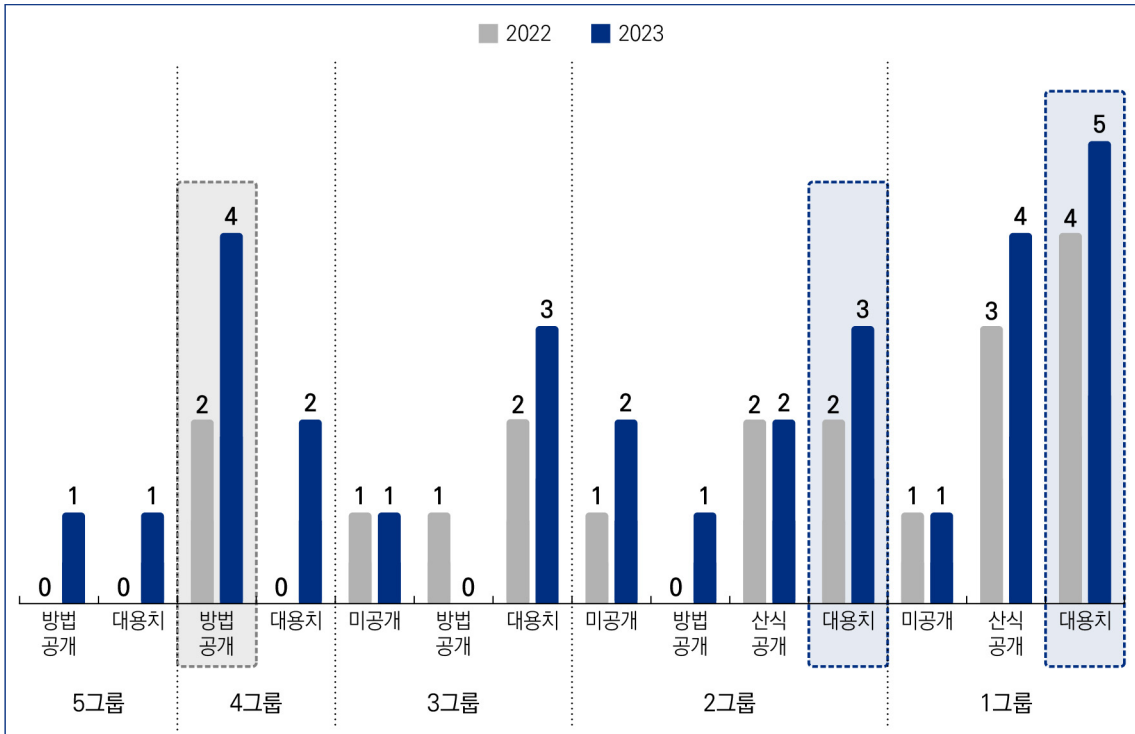
〈표 4〉 자체 방법론 채택 기업의 '22년 대비 '23년 공개 수준별 기업목록

구분	기업명	2022	2023
대용치		1	5
	하나금융지주	1	1
	KB금융지주	.	1
	신한지주	.	1
	카카오뱅크	.	1
	현대글로벌비스	.	1
산식 공개		3	4
	두산에너지빌리티	1	1
	삼성에스디에스	1	1
	신한지주	1	.
	기아	.	1
	현대차	.	1
방법 공개		2	3
	LG유플러스	1	1
	현대제철	1	1
	LG디스플레이	.	1
미공개		2	3
	삼성화재	1	1
	카카오	1	1
	아모레퍼시픽	.	1
총계		8	15

- 측정 기업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자체 측정 방법론의 공개 수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준거 가격 및 대용치 공개 기업이 '22년 1개사에서 '23년 5개사로 4개사 증가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임
 - 대용치 공개 기업을 살펴보면, 금융업종의 전년 대비 공개 수준 확대가 두드러짐
- 자체 측정 방법론은 컨설팅 모델, SROI와 같이 표준화된 방법이 아닌, 기업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론임
 - 방법론과 산식, 대용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가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어 '검증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하지만, 자체 방법론을 채택한 15사 중 80%에 해당하는 12사가 방법론, 산식, 준거 가격과 대용치를 공개한 만큼(검증 가능성 확보) 신뢰도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시가총액별 공개 수준

〈그림 9〉 시가총액 그룹별 공개 수준



- 시가총액 그룹별 공개 수준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인 1, 2그룹에서 대용치 공개의 비중이 약 45%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남
 - 1그룹의 경우, '22년과 '23년 각 8, 10사 중 대용치 공개 기업이 각 4, 5사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2그룹은 '22년과 '23년 각 5, 8사 중 대용치 공개 기업은 각 2, 3사로 40%, 37,5%를 차지함
- 반면 하위 그룹인 4, 5그룹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방법 공개 비중이 과반을 차지함
 - 특히 4그룹은 '22년과 '23년 각 2, 6사 중 방법 공개 기업은 각 2, 4사로 100%, 66.7%를 차지했으며 5그룹은 '23년 총 2사 중 1사가 방법을 공개함
- 앞서,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직접 창출 사회 성과가 미미한 측정 활동에 자원을 배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시가총액 기준 우량기업일수록 엄정한 검증이 수반되는 '대용치 공개' 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측됨

□ 그룹사별 사회 성과 공개 추이

- '22년과 '23년 모두 사회 성과 측정치를 공개한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사 기준, '22년 대비 '23년 공개 계열사 수와 공개 비율은 모두 증가함

〈표 5〉 '22년 대비 '23년 그룹사별 계열사의 사회 성과 공개 추이²⁶⁾

구분	2022			2023		
	비율	공개	전체	비율	공개	전체
SK	100%	7	7	100%	9	9
삼성	33%	4	12	45%	5	11
현대차	29%	2	7	63%	5	8
카카오	100%	1	1	100%	2	2
LG	14%	1	7	29%	2	7
두산	50%	1	2	50%	1	2
기타	5%	3	64	10%	6	61

〈표 6〉 '22년 대비 '23년 4대 그룹사별 사회 성과 공개 방식, 수준 및 단위

구분	측정 방법	공개 수준	측정 단위	2022	2023
SK	DBL	대용치	기업	7	9
삼성	자체	산식 공개	기업	1	1
		X	제품/서비스	1	1
	컨설팅	산식 공개	기업	2	2
		방법 공개	기업	.	1
현대차	SROI	방법 공개	PJT	1	1
	자체	대용치	PJT	.	1
		산식 공개	제품/서비스	.	1
			PJT	.	1
방법 공개	PJT	1	1		
LG	자체	방법 공개	제품/서비스	.	1
			PJT	1	1

- 공개 계열사 수 기준으로, 4대 그룹사인 SK, 삼성, 현대차, LG는 '22년, 각 7, 4, 2, 1개 계열사가 사회 성과를 공개했으며 '23년엔 각 9, 5, 5, 2개 계열사가 공개함
 - SK그룹은 '22년 대비 '23년, 공개 계열사 수 기준 7사에서 9사로 증가했으며 전체 계열사 대비 공개 계열사 비율은 모두 100%로, 가장 우수한 수준을 기록함
 - 삼성그룹은 '22년 대비 '23년, 공개 계열사 수 기준 4사에서 5사로 증가했으며 전체 계열사 대비 공개 계열사 비율은 33%에서 45%로 증가함

26) 시가총액 100위 이내 계열사 중 그룹사 소속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함

- 현대차그룹은 '22년 대비 '23년, 공개 기업 수 기준 2사에서 5사로 증가했으며 전체 계열사 대비 공개 계열사 비율은 29%에서 63%로 크게 증가함
- LG그룹은 '22년 대비 '23년, 공개 계열사 기준 1사에서 2사로 증가함
- 다만, 시가총액 100위 이내 상장 계열사가 다수 존재해 사회 성과 공개 계열사가 다수 존재하는 그룹사(A)와 상장된 계열사 수 대비 사회 성과 공개 계열사 비율이 높은 그룹사(B)의 공개 수준 우열을 가리긴 어려움
 - 예컨대 시가총액 100위 이내 계열사가 2개 존재하는 카카오(B)의 경우, 두 곳 모두 사회 성과를 공개해 100%의 공개 비율을 보임. 이는 시가총액 100위 이내 총 7개 계열사를 보유했으나 그중 2곳만 공개한 LG그룹(A)보다 높은 공개 수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총 8개 계열사 중 5곳이 공개한 현대차그룹보다 우위를 보인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 공개의 양적 측면과 더불어 질적 측면 역시 고려해야 함. 이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측정 방법의 일관성, 즉 '비교 가능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SK그룹은 DBL이라는 자체 측정 모델을 개발해 전 계열사의 사회 성과를 동일한 방법, 기준을 통해 산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산식 및 대응치를 공개하고 있음. 이는 계열사 전체에 대한 중, 횡단적 분석을 가능케 해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임
 - 삼성그룹은 '23년 기준 컨설팅사 모델 활용 계열사와 자체 측정 방식 활용 계열사가 각 3, 2사 존재함. 공개 수준은 미공개, 방법 공개, 산식 공개 각 1, 1, 3사를 기록해 '비교 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임. 또한 전체 그룹사 중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했으나 대응치를 공개한 기업은 없어 상대적으로 '검증 가능성' 수준이 저조함
 - 현대차그룹은 '23년 기준 SROI를 활용한 기업 1사와 자체 측정 기업 4사가 존재함. 공개 수준을 살펴보면 방법 공개, 산식 공개, 대응치 공개 계열사가 각 2, 2, 1사 존재해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그룹사 내 '비교 가능성'은 저조한 모습을 보임
 - LG그룹 계열사는 모두 자체 측정 방법론을 택하고 있으며 측정 방법을 공개하고 있음. 향후 주요 계열사를 포함해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확장이 필요해 보임
- 한편 '확인 가치' 측면에서, SK그룹은 모든 계열사가 가장 포괄적인 피드백 범위인 '기업'차원 사회 성과를 측정한 점에서 타 그룹사보다 나은 수준을 기록함

요약 및 결론

- 사회 성과 측정 방법론 발달에 따라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기업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띄고 있음

- 투입 비용 대비 계량적 성과를 측정해 ESG 활동 수준 진단과 효율성 개선을 돕는 이점을 바탕으로 SROI, 컨설팅사 모델, 기업 자체 개발 모델 등 다양한 성과 측정 방법론이 태동함
- 한편,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컨설팅 모델, SROI와 같은 전통적 측정 방법보다 자체 개발한 측정 방법론을 도입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함
 - 자체 측정 방법을 택한 기업 중 준거 가격 및 대응치까지 공개한 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기업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측정 모델은 전통적인 모형 대비 워싱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대응치를 공개한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보강적 질적 특성인 ‘검증 가능성’을 일정 부분 확보함
- 시가총액 규모별 공개 수준의 경우,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보 공개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우량기업 위주로 사회 성과의 화폐가치 측정이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룹사별 공개 수준의 경우, 자체 측정 모델인 DBL을 활용한 SK그룹이 전 계열사에서 창출된 가치를 ① 전사적 범위에서 ② 통일성 있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 충족에 필요한 ‘확인 가치’ 및 보강적 질적 특성인 ‘비교 가능성’을 만족한 우수 사례임
 - DBL의 경우, 구체적 수치 공개 수준 역시 가장 우수함에 비춰볼 때 ‘검증 가능성’ 만족 수준 역시 가장 높음에 따라 국내 그룹사 중 사회 성과 화폐가치 측정 방법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다만, SK를 제외한 타 그룹사의 사회 성과 화폐 가치 정보가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화폐화된 사회 성과는 계량 정보라는 특성상 보고기간 동안 창출된 기업의 성과를 명징하게 제시할 수 있기에 IFRS에서 요구하는 핵심 요소인 ‘지표 및 목표(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 기회 관련 성과)’에 해당함
 - 즉, 우수한 지표 및 목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도입 현황은 활발하지 않은 수준이며 제공되는 정보 대부분이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지 못함
 - 다만, 전통적인 회계 기준 대비 태동 역사가 짧은 사회 성과 측정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보의 제한적인 유용성은 납득 가능한 결과로 판단됨
 - 정보 이용자 측면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오류 검증과 비판보다 정보 공개 확대 독려 및 유용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 필요한 시점임
 - 정보 제공자 측면에서는, 성과 측정 역량이 우수한 국내 우량 그룹사를 중심으로 근본적, 보강적 질적 특성을 만족하는 사회 성과의 화폐 가치 측정 방법을 개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코스닥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1)*

- 코스닥150 기업을 중심으로 -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코스닥 기업은 ‘이사회 독립성’, ‘이사회 활동’, ‘주주행동주의 대응 및 정보공개’, ‘감사’에 있어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 예컨대 코스닥150 기업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기업은 단 2개사로 전체 1.3%에 그쳤으며,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검토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코스닥150 기업 중 약 16%만이 중장기 배당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감사의 30% 이상이 6년 이상 장기 연임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됨
- ▶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1)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및 관련 제도 도입, 2)이사회 권한 확대 및 전문 자문 지원, 3)주주와의 실질적 소통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 수립, 4)종합적 감사 시스템 강화를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바임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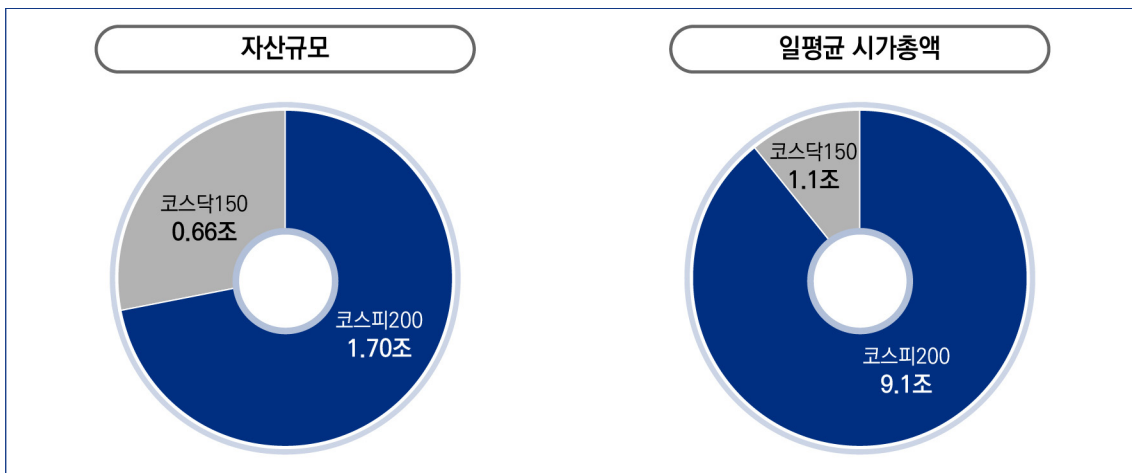
• 코스닥 기업지배구조 개관

- 코스닥 시장은 1996년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으로, 1)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코스피 시장보다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갖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은 자산규모 및 업력에서 코스피 상장기업과 차이를 보임

* 본 고는 파트 1과 2로 나누어 발간되며, 파트 2에는 주주행동주의 대응 및 정보공개, 감사에 대한 분석 및 전체 결론이 실릴 예정입니다.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한국ESG기준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박나은 선임연구원(파트장), naon@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박지영 선임연구원, jy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박준성 연구원, jspark@cgs.or.kr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지배구조파트 김희경 연구원, hk.kim@cgs.or.kr
1)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참조(www.krx.co.kr)

- (자산 규모) 각 시장 및 산업의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2년 사업연도 기준 코스닥150²⁾ 기업의 평균 자산규모는 약 0.66조원으로 1.7조원에 달하는 코스피200 평균 자산규모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2022년 일평균 시가총액 평균은 코스닥150이 코스피200보다 약 8배 낮음)(**그림 1** 참고)
- (업력)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주요 상장사들의 업력은 코스피 시장보다 평균 13년 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남³⁾

〈그림 1〉 2022 사업연도 코스피200-코스닥150 자산규모 및 시가총액 평균 비교



* 출처: FN가이드

- 코스닥 기업은 성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투자 자본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당국은 그간 코스닥 기업에 대해 혁신과 성장을 강조하며 유연한 정책을 시행해 옴. 특히 코스닥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ESG 정보공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코스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 공개에 관한 ‘ESG 정보공시’의 경우, 2026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스닥 기업은 필요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
-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에 관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2019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단계적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코스닥 상장사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⁴⁾

2) 코스닥 시장 구성종목의 일평균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기준 상위 기업으로 구성됨. 자세한 지수 구성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 참고. 한국거래소, 2023.12, “KOSDAQ 150 지수 방법론”
 3) 연합뉴스, 2017.11.29., “코스닥 상장사, 코스피보다 회사 역사 평균 13년 짧다”
 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1.14.,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http://www.fsc.go.kr:8300/v/pwZcRCIUg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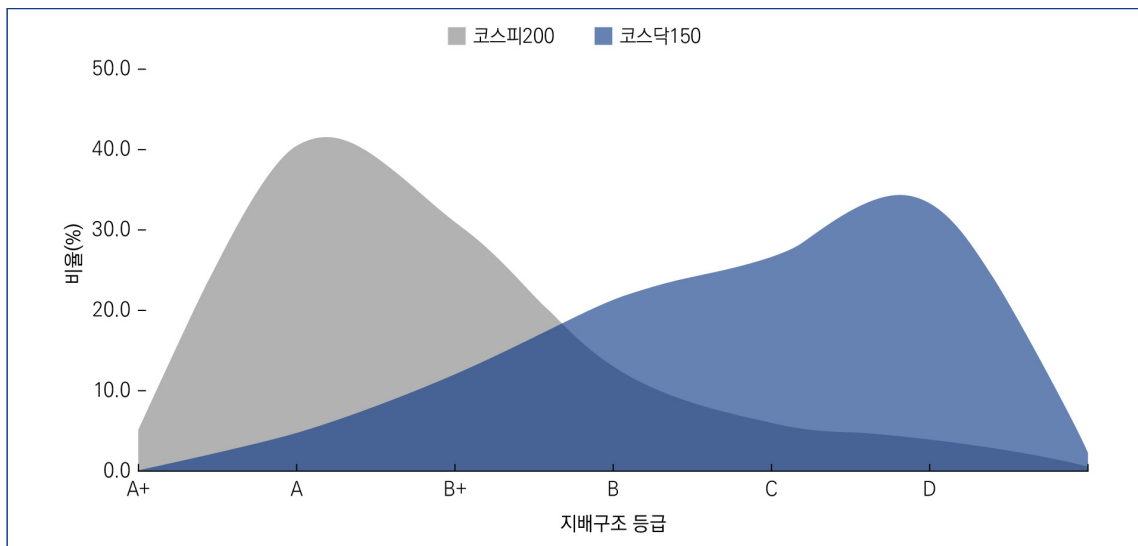
- 코스닥 기업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지속하고 있음
 - 2023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의 지배구조(G) 등급이 코스피 기업의 지배구조(G) 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기업을 비교한 결과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표 1〉 및 〈그림 2〉 참고)
 - 코스피200에서 A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이른바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91개사로 45.5%를 차지하는 반면, 코스닥150에서는 7개사로 4.7%에 불과함
 - 코스피200에서 C 이하 등급을 받은 기업(이른바 ‘지배구조 취약 기업’)은 20개사로 10%에 불과한 반면, 코스닥150에서는 90개사로 60%를 차지함
 - 지배구조 평가 시 자산규모(2조원, 5천억원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1〉 2023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배구조(G) 등급

지배구조 등급	코스피200	비율	코스닥150	비율
A+	10개사	5.0%	0개사	0.0%
A	81개사	40.5%	7개사	4.7%
B+	62개사	31.0%	18개사	12.0%
B	26개사	13.0%	32개사	21.3%
C	12개사	6.0%	40개사	26.7%
D	8개사	4.0%	50개사	33.3%
비대상*	1개사	0.5%	3개사	2.0%
계	200개사	100.0%	150개사	100.0%

* 2022년 신규 상장법인 제외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그림 2〉 2023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배구조(G) 등급 분포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 코스닥 기업의 주요 지배구조 이슈

- 2023년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기업에 비해 상대적 득점 수준이 낮음(이해관계자 소통, 감사기구, 주주권 보호, 이사회 리더십 순) (<표 2> 참고)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기업에 비해 (1) 이사회 독립성(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 등), (2) 이사회 활동(이사의 불성실한 참여, 소극적 위원회 활동 등), (3) 정보공개(이사회 및 배당 관련 정보의 불충분한 공개 등), (4) 감사 기구 및 내부통제(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부족 등) 측면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표 2> 2023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 결과 요약

대분류	유가증권	코스닥	차이
이해관계자 소통	35.5%	23.4%	12.1%p
감사	45.4%	37.4%	8.0%p
주주권 보호	40.9%	37.2%	3.7%p
이사회 리더십	15.7%	12.6%	3.1%p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 검토목적

-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구조 및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증가,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를 통한 주주가치 훼손,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코스닥 기업 또한, 여러 리스크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코스닥150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현황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함
-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 이사회 독립성, (2) 이사회 활동, (3) 주주행동주의 대응 및 정보공개, (4) 감사에 대해 개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검토 범위) 2022년 12월 29일 기준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함
 - (검토 시점) 2022년 12월 말일 기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함

본론

1) 이사회 독립성

• 이사회 독립성의 중요성 및 현황

-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사회의 독립성은 이러한 견제 기능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임(Westphal and Milton, 2000⁵⁾; Fama and Jensen, 1983⁶⁾)

- 국내 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하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엄격한 수준의 상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지난해 코스닥150 기업 중 1년간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또는 수정 의견을 1건 이상 제시한 기업은 총 8개사에 불과했음⁷⁾

① 사외이사 비율

- 이사회 독립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첫 번째 요소는 사외이사 비율임
 - (이사회 견제 기능에 대한 효과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최고경영자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짐(Yermack, 1996⁸⁾; Weisbach, 1988⁹⁾)
 - (기업 가치)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이 의무화된 이후 기업들의 주가 상승 폭이 의무화 이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Black and Kim, 2021),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 가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남(강윤식,국찬표, 2012¹⁰⁾; Dahya, Dimitrov and McConnell, 2008¹¹⁾; Rosenstein and Wyatt, 1990¹²⁾)
- (이사회 현황) 코스닥150 기업의 이사회 구성인원은 평균 5.3명으로 코스피200 기업의 이사회 구성인원보다 평균 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외이사 선임 인원 또한 2.1명 적은 것으로 나타남(〈표 3〉 참고)
 - 코스피200 기업 중 약 70%(122개사)가 자산 2조원 이상이므로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 선임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해야 하는 반면, 코스닥150 기업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은 3개사 뿐이므로 대부분의 기업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 법적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게 됨

〈표 3〉 2023 코스피200 - 코스닥150 이사회 비교

구분	이사회 규모 (평균)	사외이사 수 (평균)	사외이사 비율 (평균)
코스피200(178개사)	7.3명	4.0명	54.6%
코스닥150(145개사)	5.3명	1.9명	35.4%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5) Westphal, J. D., & Milton, L. P., 2000, "How experience and network ties affect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minorities on corporate board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5(2), pp.366-398
 6) Fama, E. F., & Jensen, M. C. 1983, "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2), pp.301-325
 7)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결과
 8) Yermack, D.,1996, "Higher market valuation of companies with a small board of director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0(2), pp.185-211
 9) Weisbach, M. S., 1988, "Outside directors and CEO turnover",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pp.431-460
 10) 강윤식, & 국찬표, 2012,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기업가치. 재무연구", 25(3), pp.451-498
 11) Dahya, J., Dimitrov, O., & McConnell, J. J. ,2008, "Dominant shareholders, corporate boards, and corporate value: A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7(1), pp.73-100
 12) Rosenstein, S., & Wyatt, J. G., 1990, "Outside directors, board independence, and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2), pp.175-191

- 법적 최소 기준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모두 약 30% (각 52개사, 44개사)로, 나머지 약 70%의 기업들은 법적 최소 요건만 맞추고 있는 실정임

②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 이사회 독립성 요소 중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됨
- **(이사회 의장의 역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시야를 제공해야 함(Krause and Semadeni, 2013¹³); Lorsch and MacIver, 1989)¹⁴
- **(이사회 의장 분리에 대한 찬반)** 겸직에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대표이사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강조함(Dalton, Hitt, Certo and Dalton, 2007¹⁵); Finkelstein and D'Aveni, 1994¹⁶) 그러나 대표이사의 과도한 권력은 사적이익의 편취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며, 겸직 찬성에 대한 의견보다 경영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에 대한 결정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함(Fama and Jensen, 1983; Westphal, 1999¹⁷).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 스스로 자신의 실적을 감시하고, 보수를 결정하고, 연임 여부를 정하게 됨(Carter and Lorsch, 2003¹⁸)
- **(견제기능에 대한 효과성과 기업 성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때 이사회 독립성이 높아지며(Rechner and Dalton, 1991¹⁹) 기업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 연구 결과 확인됨(Bhagat and Bolton, 2008²⁰); Yang and Zhao, 2014²¹)

13) Krause, R., & Semadeni, M., 2013, "Apprentice, departure, and demotion: An examination of the three types of CEO-board chair separ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6(3), pp.805-826

14) Lorsch, J., & MacIver, E., 1989, "The reality of America's corporate board",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ambridge, MA, p.1627

15) Dalton, D. R., Hitt, M. A., Certo, S. T., & Dalton, C. M., 2007, "The fundamental agency problem and its mitigation", *Academy of Management Annals*, 1(1), pp.1-64

16) Finkelstein, S., & D'Aveni, R. A., 1994, "CEO duality as a double-edged sword: How boards of directors balance entrenchment avoidance and unity of command",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5), pp.1079-1108

17) Westphal, J. D., 1999, "Collaboration in the boardroom: Behavioral and performance consequences of CEO-board social ti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2(1), pp.7-24

18) Carter, C. B., & Lorsch, J. W., 2003, "Back to the drawing board: Designing corporate boards for a complex world", Harvard Business Press

19) Rechner, P. L., & Dalton, D. R., 1991, "CEO dual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analysi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2), pp.155-160.

20) Bhagat, S., & Bolton, B., 2008,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4(3), pp.257-273

21) Yang, T., & Zhao, S., 2014, "CEO duality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an exogenous shock to the competitive environment", *Journal of Banking & Finance*, 49, pp.534-552

- **(이사회 의장 겸직 현황)**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비율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기업 모두 약 57%,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비율은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기업 모두 약 18%로 서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코스닥150 기업은 2개사에 그쳐 코스피200 기업에 비해 약 15% 낮은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표 4〉 2023 코스피200 - 코스닥150 이사회 의장 현황

구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며 선임사외이사 존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분리여부 미공시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코스피200 (178개사)	102개사	57.3%	33개사	18.5%	3개사	1.7%	29개사	16.3%	11개사	6.2%
코스닥150 (145개사)	84개사	57.9%	25개사	17.2%	0개사	0.0%	2개사	1.4%	34개사	23.5%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 분리여부를 미공시한 코스닥150 기업은 34개사로, 코스닥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이 낮음을 보여줌
-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언
 -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이 필요함
 -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효과적으로 논의가 가능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적절한 규모의 이사회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표 5〉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21)

<p>3.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p> <p>3.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이사의 과반수(최소 3인 이상)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p>

- 상법상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므로,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의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함
- 코스닥 기업이 많은 수의 사외이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단계적으로 과반의 사외이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므로(Westphal, 1999), 견제와 감독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함
 - **(실질적 독립성 부재 사례)** A사의 경우 B대학교에 실습실을 지어주고 첨단 기기를 기증하였는데, 해당 기증식 당시 관련 학과의 학장이었던 C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함
-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제도)** 회사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주주들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함
 - **(주주추천제도)**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투표방식으로, 다수의 후보가 있을 경우 주어진 의결권을 한명 또는 여러명의 이사에게 집중하거나 분배하여서 투표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여 지배주주 및 최고경영자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함
-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를 통해 의사결정의 권한을 분리해야 하며 분리가 어렵다면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견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이사회 독립성 제고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2023년 단층 이사회 제도(one-tier board system)를 택하고 있는 38개국 기준 약 74%(34% 의무, 40% 권고)까지 상승함(〈표 6〉 참고)

〈표 6〉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권고 국가 현황

<p>2017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recommended): 호주, 벨기에, 핀란드, 홍콩, 중국, 인도, 아일랜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영국 (12개국) • 의무(required):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10개국)²²⁾
<p>2019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recommended): 호주, 벨기에, 코스타리카, 핀란드, 홍콩, 중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14개국) • 의무(required):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11개국)
<p>20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recommended): 호주, 벨기에, 체코, 코스타리카, 핀란드, 홍콩, 중국,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17개국) • 의무(required):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그리스, 인도,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14개국)

* 출처: OECD Factbook

-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들 간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사회 및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또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할 것을 권고함
- 국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권고하고 있음

〈표 7〉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2021)

5.1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경영진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

- (적극적인 견제 역할 수행) 사외이사들은 전문성을 통해 회사에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견제·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숙지하고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함

2) 이사회 활동

• 이사회의 적극적 관여의 중요성

- 최근 이사회 중심 경영의 기업문화 변화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확대됨
- 한국ESG기준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함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①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②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③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④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⑤ 기타 ESG 관행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등 총 5가지의 주요 역할을 지님
-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Pearce and Zahra(1992)²³⁾는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 및 감독하고, 투자 등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며,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을 결정하는 기구라고 설명함. Golden and Zajac(2001)²⁴⁾은 더 나아가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함
 - 김봉진·한주희(2012)²⁵⁾는 기업전략을 수립 및 결정하는 데 있어 경영진뿐만 아니라

22) 이원화 이사회 제도가 도입되어있는 러시아, 남아공 제외

23) Pearce and Zahra, 1992, "Board composition from a strategic contingency perspectiv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9(4), pp. 411-438

24) Golden, B. R. and Zajac, E.. 2001, "When will boards influence strategy? Inclination X power = strategic chan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2 (12), pp. 1087-1111

25) 김봉진·한주희, 2012, "이사회 의 구조적 특성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 12권 제3호, pp. 267-289

- 이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며, 이사회의 적극적 관여를 통한 이사회의 조언 기능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핵심 요소라고 설명함
- 신흥철(2015)²⁶은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전략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으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도입을 제시하는 등 기업전략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함
- 장윤제(2021)²⁷는 이사회가 중장기적인 이익에 기반하여 ESG요소를 고려하되, 이를 일상적 경영전략과 통합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함. ESG 정보공시에 있어 이사회는 공시기준 등 법률상 중요사항과 다르게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음

• 이사회 활동 현황

- 코스닥 기업의 이사회는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사회의 적극적 관여 및 활동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상법 및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이외의 경영활동에 대해 이사회가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함
 - 구체적으로 이사회(산하 위원회 포함)에서 전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지, ESG 중대성 선정과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지, 부패방지 프로그램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지,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는지²⁸를 살펴봄

〈표 8〉 코스피200 - 코스닥150 이사회 활동 현황

구분	전사적 리스크 관리		부패방지 프로그램		ESG 중대성 평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코스피200 (178개사)	42개사	23.6%	63개사	35.3%	33개사	18.5%	16개사	8.9%	24개사	13.4%
코스닥150 (145개사)	5개사	3.4%	7개사	4.8%	5개사	3.4%	0개사	0.0%	2개사	1.3%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 코스피200 기업의 이사회는 다양한 경영활동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여 및 검토하고 있으나, 코스닥150 기업의 이사회 관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사적 리스크 관리, 부패방지 프로그램) 최근 기업의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의

26) 신흥철, 2015, "전략에의 기여를 통한 이사회 역할 제고 방안 : 이사회 BSC 및 전략적 스코어카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제44권 제1호, pp. 151-183
 27) 장윤제, 2021, "ESG 활성화를 위한 기관투자자와 이사회의 역할 - 재무적 성과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 pp. 117-153
 28) 2023년 한국ESG기준원 평가 결과 기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해짐. 코스피200 기업 이사회에서는 약 23~35%가 해당 내역을 검토하고 있으나, 코스닥150 기업의 이사회에서는 약 3~5%만이 해당 내역을 검토함

- **(ESG 중대성 평가)** ESG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위해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중요도를 도출하여 전사적으로 ESG 전략수립 및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임. 실제 코스피200 기업 중에서는 약 19%가 검토하고 있었으나, 코스닥150 기업에서는 약 3%만이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고경영자 승계 관리)** 최고경영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또는 임기 만료 시 원활한 승계를 위해 이사회는 후보군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함. 코스닥150 기업 중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는 기업은 1곳도 없었음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이사회는 회사에 필요한 사외이사의 역량이 무엇인지 정립하고 원활한 이사회 승계를 위하여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150 기업 중 이사회가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기업은 2곳에 불과함

□ 이사회의 적극적 직무수행을 위한 여건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회사 차원의 지원 수준에 대해 살펴봄
 - 구체적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인력 지원 여부, 감사위원 또는 감사 대상으로 전문 감사교육 실시 여부, 전체 사외이사의 사내외 교육 참여 여부²⁹⁾를 살펴봄

〈표 9〉 코스피200 - 코스닥150 이사 직무수행 여건 현황

구분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 전문인력 지원		감사위원 또는 감사 대상으로 전문 감사교육 실시		전체 사외이사의 사내외 교육 참여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코스피200 (178개사)	95개사	53.3%	151개사	84.8%	124개사	69.6%
코스닥150 (145개사)	24개사	16.5%	55개사	37.9%	47개사	32.4%

* 출처: 2023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 코스피200 기업은 대체적으로 사외이사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코스닥150 기업의 사외이사 지원 수준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외부 전문 인력 지원)** 사외이사의 충실한 이사회 활동을 위해 법률, 회계, 경영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코스피200 기업 중 약 53%가

29) 2023년 한국ESG기준원 평가 결과 기반

외부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코스닥150 기업은 약 17%만 지원하고 있음

- (사내외 감사 교육) 전문 감사 교육(사내 또는 외부 교육)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회계, 감사 등 전문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와 연계시켜 감사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150 기업은 약 33~38%만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는 코스피200 기업에 비해 약 40% 낮은 수준임

• 이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코스닥 기업의 제한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스닥 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코스닥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이사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권한 확대) 이사회 결의사항 범위를 확대하여, 비재무적 성과와 리스크 관리 등 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권한은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또는 정관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음
 - 코스피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이사회 구성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위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위임하고 있음. 이에 반해 코스닥 기업들은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따라서 코스피 기업들의 산하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안건 중 ESG 중대성, 전사적 리스크 관리,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주주권리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결의사항의 기존 범위(상법 및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등)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의 안건을 추가·확대하고, 이사회 및 이사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의 직무수행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 충실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자문 및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전문적이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를 대상으로도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전문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이를 통해 산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필수적인 안건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평가와 보상)** 이사회 평가를 실시하고, 사내이사의 경우 이에 따른 금전 또는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경영진 및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무수행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사회 평가를 통해 이사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음. 또한 이사회 참석률, 직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이사 보수성과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이사들의 동기부여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이사회 평가의 주체가 자가평가 또는 제3자 평가 등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성과보상과 연동하게 될 경우 이해상충 또는 사익추구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음

Global News

1. “그린워싱” 관련 ISSA 5000 초안 의견 제출 현황, 반응 및 시사점

양희원*

□ 서론 : ISSA 5000 초안 및 그린워싱 관련 질문 개요

- ISSA 5000(International Standards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및 문제에 대해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에 사용되던 ISAE 3000(International Standards on Assurance Engagement 3000)을 포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성 검증 특화 기준임
- 2023년 8월 2일 IAASB는 지속가능성 정보 및 문제에 대해 검증 의견을 제시하는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International Standards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에 대한 공개 초안을 ED-5000(Exposure Draft-5000)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함
- 본 보고서는 지난 KCGS Report 14권 2호¹⁾와는 다르게 2023년 12월 1일까지 IAASB가 **이해관계자에게 받은 의견서 내용 중 그린워싱과 관련된 19번 문항에 관련된 회신내역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SSA 5000 초안에 대한 질문지 19번 문항〉

Do you agree that ED-5000 appropriately addresses the topic of fraud (including “greenwashing”) by focusing on the susceptibility of the sustainability information to material misstatement, whether due to fraud or error? If not, what suggestions do you have for increasing the focus on fraud and why?

(See Explanatory Memorandum Section 1-G, paras. 108-110)

ED-5000은 사기 주제(**그린워싱을 포함**)에 대해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중대한 왜곡표시에 관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사기에 대해 초점을 더 가지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EM 섹션 1-G, 단락 108-110 참조)

*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실 선임연구원(미국회계사), hwyang@cgs.or.kr

1)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현황과 시사점”, 양희원 선임연구원, KCGS Report 14권 2호 17페이지, (2024.03.06.)

- 또한, 146개 의견 중 ISSA 5000 최종안 내에 그린워싱이라는 용어를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최소 9개 이상이며, 명시를 반대하는 의견도 최소 7개 이상 확인되어³⁾, 최종안에 그린워싱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음
 - 의견서 전체에 대한 분석은 본 부속자료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 ※ 위 자료는 반드시 참고로만 활용하고 영문 본문을 직접 확인할 것
- **본론 2 : ISSA 5000에서 다루는 그린워싱에 대한 반응**
- 국내에서는 초안에 그린워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ISSA 5000에 그린워싱에 대한 검증을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음⁴⁾
 - 다만, 큰 틀에서 그린워싱을 경계하자는 방향은 보도내용과 다르지 않음. 실제로 IAASB의 유관기관인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는 웨비나를 통해 보고기준·검증기준·윤리기준의 3축 체계를 통해 그린워싱에 대한 일차적 저지선 강화 계획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한 바가 있음⁵⁾
- * Reinforcing the first line of defense against “greenwashing” and other corporate malfeasance
- **결론 : 시사점**
- 그린워싱에 대한 검증은 ISSA 5000 내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가이던스, 예시 또는 명문화된 규정 등의 형태로 어떻게든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초안에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린워싱 외에도 ISSB 지속가능성보고기준 및 IESBA 윤리기준과 연계한 3축 구조를 통해 다른 워싱(소셜워싱, 임팩트워싱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
 - 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주체는 제3자검증을 통해 지속가능보고서의 내용이 그린워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ISSA 5000이 요구하는 제한적 또는 합리적 확신 수준에서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⁶⁾
 - 제한적 또는 합리적 확신 수준을 밝히는 경우 그 의견에 대한 책임은 검증 주체인 제3자와 발간 주체인 기업이 동시에 지게 됨. 그러므로 발간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될 기업은 기본으로 돌아가 그린워싱 등 각종 워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음

3) 입장이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장이 명확한 경우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최소 N개 이상”으로 표현함

4)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1585, “대한상의, “기업 그린워싱 피하려면 글로벌 기준 맞춰 ESG 경영 내실화해야””, 비즈니스 포스트, (2024.02.05.)
<https://www.etoday.co.kr/news/view/2328209>,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이투데이, (2024.02.05.)

5) <https://www.ethicsboard.org/publications/webinars-sustainability-exposure-draft>, WEBINARS FOR THE SUSTAINABILITY EXPOSURE DRAFT, (2024.02.27.)

6)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01>, “백태영 ISSB 위원, 국내 ESG 공시 인증 “IAASB 기준 채택 전망””, ESG경제, (2023.11.08.)

Global News

2. 싱가포르, 기후 공시 의무화 계획 발표

김예린*

- 지난 2월 28일, 싱가포르 재무부 제2장관인 Chee Hong Tat은 의회에서 기업들의 기후 공시 의무화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함¹⁾
 - 발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기후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ISSB 기준에 따라 공시를 요구할 예정임
 - 기후 공시 의무화 계획 및 기후 공시 요구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ACRA(싱가포르 기업청)와 SGXRegCo(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산하 규제기관)이 확정하여 발표한 바를 따름
- 싱가포르의 기후 공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임
 - (기후 공시 의무 대상의 단계적 확대) 2025년에는 상장사만을 대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2027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연 매출과 5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비상장사까지로 기후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ACRA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의 기후 공시 활동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규모가 비교적 작은 비상장사에 대해 기후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의 단계적 확대) 상장사는 2025년에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다음 해인 2026년에는 Scope 3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함. 또한 2027년에는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해 제3자인증을 받을 것이 요구됨
 - 기후 공시 의무 대상인 비상장사의 경우 2027년부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며, 2029년부터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해 제3자인증을 받을 것이 요구될 예정임. 하지만 Scope 3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9년 이전에는 공시 의무가 없다는 계획만이 공개됨

〈표 1〉 연도별 기후 공시 요구 사항

기후 공시 요구 사항	상장사	기후 공시 의무 대상 비상장사
Scope 1 & Scope 2 배출량	2025년	2027년
Scope 3 배출량	2026년	2029년 이후
Scope 1 & Scope 2 배출량에 대한 제3자인증	2027년	2029년

출처: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ACRA)

* KCGS 책임투자본부 ESG 데이터팀 연구원, yrkim@cgs.or.kr

1) The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Climate reporting to help companies ride the green transition, 2024.02.28., <https://www.acra.gov.sg/news-events/news-details/id/778>

- ACRA와 SGXRecCo는 기후 공시에 대한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기후 공시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예상함
 - 홍콩, 호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경우 2024년부터 ISSB 기준에 따라 기후 관련 공시를 도입할 예정임
 - SGXRegCo의 CEO인 Tan Boon Gin은 SGX에 상장된 기업들은 기후 공시를 선도적으로 해왔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기후 공시 의무화를 통해 싱가포르의 기업들이 투자자 및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여 자금 조달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기후 공시 의무화 계획 발표 이후인 지난 3월 1일, 싱가포르 경제 개발청은 기업의 기후 공시에 드는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금(Sustainability Reporting Grant)'을 도입할 것이라 발표함²⁾
 -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 비용의 최대 30%까지 자금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금액의 상한선은 15만 싱가포르달러임
 -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됨에 따라 기후 공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한 기후 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2024년 말부터 3년 동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작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며, 첫해에는 비용의 70%, 향후 2년 동안은 비용의 50%가 제공될 예정임

2) The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Supporting businesses i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and sustainable future, 2024.03.01., <https://www.edb.gov.sg/en/about-edb/media-releases-publications/supporting-businesses-in-the-transition-to-a-low-carbon-and-sustainable-future.html>